

-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관리 · 운영 -

**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안**

의안 번호	553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9. 9.  
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·운영을 위하여 (사)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「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」의 민간위탁기간(2018. 1. 1. ~ 2019. 12. 31.)이 만료됨에 따라

나. 「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」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통단지입주업체들이 유통단지 발전을 목표로 설립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(사)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에 연속해서 민간위탁코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(위탁사무 대상)
- 「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4조(위탁운영)

### 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「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」는 대구종합유통단지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0년 건립된 시설로서
- 유통단지의 조성 이력 및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로 구성된 법인인 (사)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에 연속해서 민간위탁함으로써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안업무의 연속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

#### 다.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### ○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관리·운영 및 유통단지 활성화 사무

-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전반
-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양도·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
-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·업태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종합유통단지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
- 종합유통단지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종합유통단지 市 부지 매각 및 사용료 부과
- 기타 시장이 유통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

#### 라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위치	시설규모(㎡)			관리시설
		부지	건축면적	연면적	
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 지관리센터	북구 유통단지로 13길 9	1,001.1	572.75	4,190	<지하 2층, 지상 5층> - 은행, 사무실 등 - 주차장, 기계·전기·설비 등 시설물 전반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4. 12. 31.(5년)

\* 최초 위탁일 : 2010. 1. 1.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(2019년 예산기준)

- 운영위탁비 지원 : 1,050백만원(민간위탁금)

아. 2019년 제2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('19. 08. 23) 심의결과 : 재계약 적정

※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

수탁기관	2018년	2019년	비고
(사)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	‘나’등급, 83.99점	‘가’등급, 91.03점	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붙임 1

나. 민간위탁(재계약) 추진계획 : 붙임 2

다. 민간위탁 협약서(안) : 붙임 3

## 붙임 1

## 관련법규

###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##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 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9조의5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##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위탁사무 기준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6조(위탁사무 선정기준)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 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**제10조(민간위탁 계획)**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 및 필요성
2. 범위 및 내용
3. 보조 및 지원예산
4. 추진방법 및 일정
5. 기대효과
6. 그 밖에 참고사항

**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.

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**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
2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
3.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
  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(부정당업자 제재) 사실
  - 나.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, 관리·감독,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
4. 자치구별 균형분포
5.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
6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
##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**제13조(수탁기관의 선정방법)**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(이하 “경쟁방법”이라 한다)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경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,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)**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· 서류 등의 제출요구
2. 관계 공무원,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
3.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

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5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**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위탁사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,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**제18조(위탁계약 체결)**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 2.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
3.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. 수탁기관의 의무
5. 관리 · 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
6.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
7.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8.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 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
9.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
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재계약)**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회계 감사 결과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치결과,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##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

### 제4조(위탁운영)

- ① 시장은 유통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붙임 2****민간위탁(재계약) 추진계획**

## -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-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추진계획

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향후 5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·운영코자 함

### 1 추진배경

#### 위탁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19조
- 「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4조(위탁운영)

#### 추진방향

-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의 전문적·효율적인 운영과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통단지 입주업체들이 유통단지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(사)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에 위탁·운영
-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적정성 여부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와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

### 2 민간위탁 개요

#### 위탁개요

- 수탁기관 : (사)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
  - 임직원(상근) : 5명(전무이사 1, 직원 4)
  - 임원(비상근) : 13명(이사장 1, 이사 10, 감사 2)

-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4. 12. 31.(5년)
  - \* 최초 위탁일 : 2010. 1. 1.
- 위탁방식 : 센터 시설 및 유통단지 활성화 사무 일괄 위탁
- 위탁예산 : 47.5억원(년 9.5억원)
  - 인건비, 제세공과금, 시설유지관리, 공단홍보지, 대구FC A-보드 광고 등
- 선정방법 :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와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존 수탁단체에 수의계약(재계약)
- 위탁조건 : 위·수탁 협약체결하고 공증절차 이행
-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

수탁기관	2018년	비고
(사)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	‘나’등급, 83.99점	

## □ 위탁사무

-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전반
-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양도·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
-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·업태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종합유통단지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
- 종합유통단지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종합유통단지 市 부지 매각 및 사용료 부과
- 기타 시장이 유통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

## □ 민간위탁시설 현황

시 설 명	위 치	시설규모(㎡)			관리시설
		부지	건축면적	연면적	
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 지관리센터	북구 유통단지로 13길 9	1001.1	572.75	4,190	<지하 2층, 지상 5층> - 은행, 사무실 등 - 주차장, 기계·전기·설비 등 시설물 전반

### 3 민간위탁(재계약)의 필요성

- 입주업체 요구사항, 상권변화 등 종합유통단지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운영의 전문성 확보, 신속한 대처 및 신축적인 관리운영
- 구청 등 유관기관과 입주업체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현안 업무를 지속적·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,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업체 및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함
-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등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 경영지원
- 홍보시설물 관리·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
-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의 정기적 안전점검 등을 통한 시설물 보수·보강으로 내구성을 높여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

### 4 주무부서 검토의견

- 現수탁기관인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은 유통단지 입주업체들이 유통단지 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법인으로
- 유통단지의 조성 이력 및 특성을 잘 알고 있어,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,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, 유통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
- 최초 위탁계약(2010.1.1.) 체결 이후 현재까지 성실한 관리·운영으로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며,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현안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※ 재계약 근거 : 『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』 제4조

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

제4조(위탁운영) ②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 
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5

**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(안) 및 심의**

## ○ 근거 법규
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, 제15조

## ○ 위원회 구성

- 인원 : 6명(당연직 1, 위촉직 5)
- 구성방법 :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정
  - 당연직(1명) : 경제국장 ※ 간사 : 공정경제팀장
  - 위촉직(5명) :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관계전문가 위촉

## ○ 위촉직 심의위원 구성(안)

소속 · 직위	성명	생년월일	연락처 / e-mail
영진전문대학 스마트경영계열 교수	김일현	56. 2. 8	kimih@yju.ac.kr
장정호법률사무소 변호사	장정호	86. 10. 4	lawjang7@gmail.com
부동산 길 공인중개사 대표	이창용	56. 9. 9	Cr1189@naver.com
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	김병갑	68. 3. 13	economy123@hanmail.net
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	김순덕	58. 5. 16	shinyoung1996@hanmail.net

※ 위원임기 :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한 이후 임기 종료

## ○ 심의위원회 개최

- 일시 : 2019. 9. 4. ~ 9. 6.(3일간) 예정

- 심의안건 : 재계약(수의계약)에 따른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

- 심의방법 : 서면심의 · 심의의결 전까지 민간위탁기관(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)의 사업계획서 및 현황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사전검토

- 의결방법 : '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(붙임1)'에 따른 배점결과 반영
  - \*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'적정', 70점 미만 시 '부적정'

- 위원 과반수 심사 및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'적정' 시 의결

## ○ 외부 심사위원 심의수당 지급 : 100,000원 × 5명 = 500천원

## 6 향후 추진일정

-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: '19. 8월
-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: '19. 9월
- 시의회 동의(보고) : '19. 9월
- 위·수탁협약서 심사(법무담당관실) : '19. 10월
- 일상감사(감사관실) : '19. 10월
-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19. 11월
- 위·수탁 협약서 공증 : '19. 12월
- 시 홈페이지 공개 : '19. 12월

붙임 3

민간위탁 협약서(안)

##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관리운영사무 위·수탁 협약서(안)

대구광역시장(이하 ‘시’이라 한다)과 (사)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이사장(이하 ‘이사장’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, 「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(이하 ‘조례’라 한다)에 의거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사무의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계약은 “시”가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할 목적을 위해 센터 시설 및 유통단지 활성화 사무 전반을 “이사장”에게 위탁함에 있어 “시”와 “이사장”의 권리·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탁사무)** ① “시”가 “이사장”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전반
2.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양도·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
3.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·업태관리 등에 관한 사항
4. 종합유통단지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
5. 종합유통단지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6. 종합유통단지 市 부지 매각 및 사용료 부과
7. 기타 시장이 유통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

② “이사장”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 설 명 :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

2. 소재지 :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3길 9호(산격동 1619)

3. 규모 : 대지 1,001.1m<sup>2</sup>, 연면적 4,190m<sup>2</sup>(지하2, 지상5)

4. 주요시설 : 주차장, 기계실, 근생 및 업무시설

※ 위탁장비 :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인계인수하는 바에 의함

③ 제1항의 위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“시”와 “이사장”이 협의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3조(위탁기간)** ① 이 계약에 의한 위·수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“시”와 “이사장”이 협의하여 위·수탁기간을 조정할 수 한다.

**제4조(수탁재산의 관리)** ① “이사장”은 수탁재산(수탁기간 중 신·증축, 개·보수,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,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)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“이사장”은 이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·증축, 개·보수, 주요 장비의 구입·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“시”的 승인을 얻어야 한다.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“이사장”은 이에 관하여 “시”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“이사장”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“이사장”은 “시”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.

④ “이사장”은 이 위탁계약 체결 후 “시”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(신·증축, 개·보수 포함)하거나,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이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“이사장”이 설치하거나 구입(신·증축, 개·보수 포함)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을 지체 없이 “시”에게 기부하고,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⑥ “이사장”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“시”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시”는 “이사장”的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⑦ “이사장”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(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)를 “시”에게 귀속시켜야 한다.

⑧ “이사장”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,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, 양도, 전매, 대여,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.

\* 행정재산 일부 제3자 전대 시

▶ 단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⑨ “이사장”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(안전점검 포함)하여야 하며 “시”가 요구할 시 즉시 결과를 “시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사업계획)** ① “이사장”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“시”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당해 연도(최초 연도)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, 목표 달성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“이사장”的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·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, 기구·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·급여·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④ “시”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, “이사장”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·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“이사장”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“시”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 “이사장”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을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“시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사업의 수행)** ① “이사장”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사업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“이사장”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공단규정을 작성하고 “시”的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. “이사장”은 공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“시”的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“이사장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자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“이사장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,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“이사장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소속 근로자,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7조(근로약정 이행 등)** ① “이사장”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,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·복리후생·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“이사장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며,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전체를 고용승계하고,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“이사장”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, “시”는 위탁기간 만료 시 “이사장”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“이사장”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, 계약해지 시, 계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“시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“이사장”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%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, 상시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“이사장”은 연도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 명세서를 “시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관계법령 등의 준수)** ① “이사장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,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및 관계 법령과 “시”的 조례,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“이사장”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사업비 지급 및 집행)** ① “시”은 “이사장”的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연액으로 결정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.

② “이사장”은 사업비를 “시”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·집행하여야 한다.

③ “이사장”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회계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,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비용은 “이사장”이 제출하여 “시”가 승인한 예산안에 의한다.

⑤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다음해의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(수입금의 징수·처리)** ① “이사장”은 수탁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전액을 “시”에게 납입하고 그 현황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“이사장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·징수방법·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“시”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“이사장”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그 수입·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“시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정산 및 반납)** ① “이사장”은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“시”에 잔액 및 이자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.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“시”에 잔액 및 이자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“이사장”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연간 운영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사인(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등)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“이사장”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,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“시”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“시”는 “이사장”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·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이사장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2조(사용허가 등)** “이사장”은 공유재산 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“시”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사용허가한 것은 이 계약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.

**제13조(감사, 관리·감독)** ① “시”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,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, 근로환경 등 “이사장”的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

사, 관리·감독한다.

② “시”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감사, 관리·감독을 하며,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. 또한, “시”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

③ “시”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,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“이사장”에게 요구하거나 “시”的 소속직원 또는 “시”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“이사장”的 업무상황·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이사장”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“시”는 “이사장”的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,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」 제27조에 따라 처분 또는 처분지시 ·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이사장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⑤ “시”는 “이사장”과의 위탁기간 만료 시 “이사장”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, 관리·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**제14조(성과평가)** ① “시”와 “이사장”은 협의에 의해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, “이사장”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“시”는 제2조에 따른 위탁사무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“이사장”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보험가입)** ① “이사장”은 “시”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

② “이사장”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 후 1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“시”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(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하고, 그 보험증권 원본을 “시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“시”가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한다.

**제16조(지위이전, 제3자 위탁 금지)** ① “이사장”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.

② “이사장”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,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“이사장”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“시”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“이사장”이 책임을 진다.

**제17조(민·형사상 책임)** ① “이사장”은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·손실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단, “이사장”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.

② “이사장”의 귀책사유로 “시”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“이사장”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“시”的 손해(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)를 즉시 “시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** ① 이 계약을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“시”와 “이사장”的 협의에 의한다.

② “이사장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“시”는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,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이사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1.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
2.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
3. 공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**제19조(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)** ① “이사장”은 위·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“시”에게 시설과 장비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 단,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“시”과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“시”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.

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“이사장”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“이사장”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,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“시”에 즉시 반환한다.

**제20조(비밀유지의무)** “이사장”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, 계약의 체결,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“시”的 비밀사항,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,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1조(계약의 해석)**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“시”와 “이사장”的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“시”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**제22조(계약의 효력 등)** ①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·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, “시”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, 관리·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·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.

---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23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.

③ “이사장”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“시”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“시”와 “이사장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.

2019년 11월 일

“시장” 대구광역시(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)

시장 권영진(인)

“이사장” (사)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(대구광역시 유통단지로 13길 9)

이사장 김경식(인)